

광명시 오리서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정 2015. 9. 30 조례 제2110호
일부개정 2016. 12. 20 조례 제2219호
일부개정 2018. 7. 31 조례 제2387호

제1조(목적) 오리 이원익 선생의 청백리 정신을 선양하고, 청렴 및 인문학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오리서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위치) ① 시설의 명칭은 오리서원으로 한다.

② 오리서원은 광명시 오리로 287에 둔다.

제3조(기능) 오리서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오리 이원익 청백리 정신 선양을 위한 청렴·인성교육 및 인문학 교육
2. 오리 이원익 선생 관련 자료의 연구
3. 시민의 학술, 교육 및 행사 등 장소 제공
4. 오리서원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
5. 그 밖에 오리 이원익 선생 기념사업

제4조(위탁관리) ① 광명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란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오리서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명문화재단, 법인,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·관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2. 20>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시장의 지도·감독을 받아야 한다.

③ 시장은 오리서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④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되,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광명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를 수 있다. <단서신설 2016. 12. 20>

⑤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광명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5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·망실하였을 때에는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.

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.

④ 수탁자가 제3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 다만, 수탁자가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위탁자인 시장 원상복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6조(위탁의 취소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수탁자격을 상실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았을 때

2. 이 조례와 관계법령 또는 시와의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

3. 오리서원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

4. 그 밖에 공익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
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,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제반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제7조(시설 사용료의 징수) ① 시장이나 수탁자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광명시민이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2. 20>

②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<신설 2016. 12. 20>

제8조(수강료의 징수) ① 시장이나 수탁자는 오리서원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청렴·인성 교육 및 인문학 교육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7. 31>

② 제1항에 따라 청렴·인성 교육 및 인문학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광명시 소재 법인, 기관, 단체 또는 광명시 주민등록자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7. 31>

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

1. 오리서원 사정으로 교육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
 2. 수강 신청자가 수강을 포기한 경우
 3. 그 밖에 공익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
- ④ 수강료의 징수 및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제9조(강사료)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따른 강사료는 정부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하되, 교육의 특성, 해당 분야의 경력이나 전공, 전문지식 요구 정도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.

제10조(보조금) 시가 수탁자에게 지원하는 오리서원 운영비 등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및 정산에 관하여는 「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적용한다.

제11조 삭제 <2016. 12. 20>

제12조(지도감독)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내역,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광명시 오리 이원의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 <2016. 12. 20 조례 제221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7. 31 조례 제238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16. 12. 20>

시설 사용료 징수 및 반환기준(제7조제2항 관련)

1. 시설 사용료 징수기준

(단위 : 원)

구 분		기 준	사 용 료	비 고
강당	대관	1회/2시간	20,000	
강의실	대관	1회/2시간	10,000	인의정/예지실
※ 비고 1.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, 행사준비, 철수를 위한 이용 시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. 다만, 강당에 한한다. 2. 추가요금 · 강 당 :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,000원 · 강의실 :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5,000원				

2.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

구 분	환불사유(환불 신청일)	환불기준
시설 사용료	운영자 귀책사유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	100퍼센트
	사용 개시 5일 전까지	100퍼센트
	사용 개시 4일 전까지	90퍼센트
	사용 개시 3일 전까지	80퍼센트
	사용 개시 2일 전까지	70퍼센트
	사용 개시 1일 전까지	60퍼센트

[별표 2] <개정 2018. 7. 31>

수강료의 징수 및 반환기준(제8조제4항)

1. 수강료 징수기준

구 분	수강료	비고
법인, 기관, 단체, 개인	1명 당 2만원	총 10명 이상이 신청된 경우에 교육 실시

2. 수강료 반환기준

반환사유		반환금액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오리서원 사정으로 교육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· 공익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		수강료 전액
· 수강 신청자가 수강을 포기한 경우	수강 개시일 1일전까지	수강료 전액
	수강 개시 후	수강료 60퍼센트

